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공개 법제의 정립과 언론

성낙인

영남대 법학과 교수

### 1. 서

#### (1) 정보화 사회의 법적 대응

현대 정보화 사회의 진전은 기존의 사회활동의 양식에 새로운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정보화 사회에서의 정보유통의 양식은 대량적이고 집단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정보화가 진척되지 못한 사회에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양상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 정보에 대한 접근이용의 양식도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단순히 소극적으로 정보를 입수하는 입장에서 나아가 이제 국민은 정보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이용하고 정보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입장으로 바뀌어 가게 된다.

종래 국민은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직접 입수하는 경우는 거의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것은 전통적인 행정의 비밀주의의 탓으로만 돌릴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도 이들 정보에 대해서 일일이 국민에게 액세스를 인정하기란 행정기관 자체의 관리능력에 한계가 따를 수 밖에 없었다. 하루에도 수천 수만의 문건이 생산 유통되는 상황하에서 이들 문건을 수기작업으로 일일이 정비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에 따라 자연히 국민은 직접 행정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접할 기회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고, 결과적으로 언론기관의 취재보도를 통한 정보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 정보화의 전개에 따라 엄청난 정보의 대량집적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들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일 또한 용이해졌다. 따라서 국민들이 요망하는 정보에 대한 액세스가 가능해 졌다. 행정기관 또한 종래 집적이 불가능하던 대량적인 정보의 관리를 통해서 대국민서비스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반면에 이들 정보를 대국민통제의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이에 국민으로서의 자기와 관련된 정보를 직접 액세스할 수 있는 권리의 제도화를 요망하게 된다. 이들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서는 기존의 법체계로는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정보화가 진전되기 시작한 1970년대 이래 이에 관한 새로운 법제의 정립을 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에서도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 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개인정보보호법」이 1994년 1월 7일에 제정되어 1995년 1월부터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또한 1994년 7월에 정보공개법제정을 위한 정보공개법 심의위원회를 총무처에 설치하여 법안심의에 착수하였다. 1994년 12월 21 일에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정부의 「정보공개법시안」을 공청회에 부친 바 있다. 앞으로 정보공개법은 정부의 입법예고과정을 거쳐 금년 중에 국회에서 제정할 것이 예상된다. 1)

## (2) 개인정보보호 정보공개 언론의 상호관련성

개인정보의 보호는 흔히 정보화 사회에서 「유리알 인간화」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심지어 「국가권력에 의한 인간사냥」이라고까지 문제제기가 될 만큼 심각한 사안이다. 정보공개는 행정의 비밀주의를 타파하는 법적 장치라는 점에서 「정책실명제」라고 불리고 있다.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와 정보공개는 필연적인 요청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개할 경우 그것은 정보공개의 원리에는 부합할지라도 자칫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 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들 법제의 실천적 운용에 있어서는 두 개의 권리의 규범조화적 적응이 필요해 진다.

한편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생명선으로서의 가치에 부합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최대한 보장과 최소한 제한의 원리에 입각해 있다. 언론의 자유는 국민일반이 누리는 자유와 권리이다. 그러나 종래 국민은 일반적으로 언론보도를 통해서 정보를 얻기 때문에, 여기서는 특히 언론기관의 취재보도의 자유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공개법이라는 새로운 법제의 정립이 어떠한 관련성을 갖게 될 것인지를 주된 문제로 부각시키려 한다.

## II. 개인정보보호 정보공개 언론의 자유의 헌법가치

### 1. 고전적 기본권으로서의 언론의 자유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개별적 기본권으로 보호하고 있다. 헌법 제 21 조 제 1 항의 원칙규정에 이어 제 2 항은 사전검열금지, 제 3 항은 언론기관시설법정주의, 제 4 항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언론에 대한 사전적 제한 즉 검열은 금지된다. 검열이라 함은 「정보와 사상을 발표하기 이전에 국가기관이 미리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발표를 저지하는 것」을 말한다.2) 그러나 언론에 대한 사후적인 제한은 헌법 제 37 조 제 2 항의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해 가능하다. 이에 관해서는 언론관계 기본법률이라 할 수 있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을 비롯한 실정법상의 제한을 받게 된다. 3)

고전적 언론의 자유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오늘날 언론이 사회에 미치는 엄청난 파급효과에 비추어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제 4 항). 이에 따른 전형적인 것으로서는 국가기밀, 사생활비밀, 명예훼손,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에 입각한 제한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언론의 자유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헌법상 기본권보다 더 강력한 보호와 보장을 해주는 이른바 언론의 자유의 우월적 가치를 용인하는 대신,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엄격히 하고 있는 것이 현대적인 언론법제의 일반적 경향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언론 보도에 따른 국민의 권리구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반론권을

제도화한 언론중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특히 현대적인 정보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국민에 대한 정보의 사실상 독점적 공급원으로서의 언론의 위상은 새로운 변용을 맞게 된다. 4)

## 2. 새로운 기본권으로서의 사생활 보호와 알 권리(정보권)

사생활보호의 문제는 이미 100년 전 Warren-Brandeis의 논문을 통해서 그 중요성이 인지된바 있다 그것은 저속한 황색언론으로부터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자는 취지였다. 그 이후 끊임없이 개인의 사생활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그것이 단순한 사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헌법상의 가치를 갖는 자유와 권리로서의 성격을 갖게 된 것은 오늘날 정보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새로이 사생활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된 1970년대 이후의 일이다.5) 이에 우리 헌법에서도 1987년에 새로이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제 17 조)라는 규정을 두어 개별적 기본권으로서의 위상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이념의 공적 부문에서의 구체화 법률로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 있다.

한편 국민의 알 권리의 헌법적 보장은 아직 헌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권리는 아니라 하더라도, 알 권리의 헌법적 가치를 갖는 기본권으로서의 위상에 대하여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에 알 권리의 헌법적 기초에 관해서는 국민주권주의(제 1 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제 10 조), 표현의 자유(제 21 조) 등으로부터 연역해 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내 헌법학이론 및 헌법학교과서에서는 표현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알 권리를 인식하고 또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알 권리의 본질과 언론의 자유는 반드시 동일한 범주의 가치를 갖는 것으로 일의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즉 알 권리는 언론을 포함한 국민일반이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에 대한 액세스를 보장해 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때로 언론의 자유를 실질화시켜 주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종래 언론이 갖고 있던 정보의 독점적 공급기능에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 Ⅲ. 개인정보보호와 언론

### 1. 사생활 비밀의 보호의 특수한 범주로서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의 사생활보호와 언론의 국민의 알 권리충족이라는 기능 사이의 갈등구조는 그 한계와 기준을 일의적으로 논할 수 없으나, 공적인 존재, 공적인 이익이 분명한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우월적 지위를 부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중에 영합한 상업적이고 선정적인 언론보도는 사생활침해의 문제를 흔히 야기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은 곧 형사적 제재를 받게 된다(형법 제 319 조 이하).

개인정보보호법상 규율대상인 정보는 공공기관이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한하고 있다.

첫째, 이 법의 규율대상은 공공기관의 정보에 한한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아닌 사적 기관이 처리하는 정보는 이 법의 규율대상이 아니다. 예컨대 오늘날 재벌기업의 정보관리실,

언론기관, 정보용역회사 등은 엄청난 양의 국민 개개인에 관한 정보를 집적유통 시키고 있지만 이 법의 규율대상이 아니다. 1994년 세상을 놀라게 한 이른바 「지존파일당」이 백화점 신용카드 고객의 거래정보를 입수하여 이를 범행에 악용하려 하였으나 거래정보의 누출에 따른 법적 규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율대상이 아니다. 이에 앞으로 사적 부문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이 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법의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6)

둘째, 이 법의 규율대상인 정보는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정보에 한한다. 즉 수기정보는 이법의 규율대상이 아니다 이 법의 출현성격이 정보화 사회의 진전에 따른 법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일응 수긍할 수 있는 법규율의 태도이다. 따라서 수기정보에 대해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사생활보호의 일반법리에 입각한 보장과 규제가 행해지게 된다. 앞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수기정보도 규율범위로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개인에 관한 정보란 개인의 정신, 신체, 재산,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실·판단·평가를 나타내는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7)』

## 2.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언론보도의 제한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 이외의 자에게는 누설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언론이 갖는 특수한 성격과 기능상 공공기관이 보유관리 하는 개인정보를 유용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려는 행태가 출현할 수 밖에 없다.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는 법상의 제도적 장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느 누구에게도 누출되어서는 아니된다.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유기관의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정보처리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 하여서는 안된다. (제 10 조 제 1 항). 정보처리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명시한 법으로는 행정심판법 제 28 조(증거조사), 출입국관리법 제 74 조(관계기관의 협조), 토지초과이익세법 제 29 조(관계기관의 협조의무), 공직자윤리법 제 10 조(등록재산의 공개)등이 있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 3자의 권리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다음 각호의 경우는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제 2 항)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조약 기타 국제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 5. 정보주체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한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나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와 같이 법상 개인정보의 이용이 비교적 폭넓게 인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법시안에서도 비록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유익한 정보」는 정보공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에 비추어 본다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언론이 갖는 공익 내지 공공적 성격에 비추어, 비록 그 정보 자체는 개인정보로서 공공기관이 관리 보유하는 정보라 하더라도 언론기관 스스로 「공익상 유익한 정보」라고 판단하여 이를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방법이 아닌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취득하여 보도할 경우에 이를 단순히 개인정보보호의 차원에서 논하여야 할지 아니면 공익적 차원에서 논하여야 할 것인지는 신중한 검토를 요한다.

더구나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의 개념이 매우 넓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관리체계하에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해서 언론의 정보원에 대한 접근이용이 원천적으로 봉쇄당한다는 것은 자칫 언론의 공공적 차원에서의 사생활보도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논리는 현실적인 문제 상황에 대한 인식에도 기초해 있다. 즉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단계에서 의료보험 관련자료를 담당자가 유출하여 선거에 이용한 사례, 주민등록기록을 열람한 후 독신녀 주거지를 강도대상으로 선정한 사례, 자동차관리 전산망을 통하여 외제고급승용차의 차주를 확인하여 강도대상으로 선정한 사례 등이 있었다. 8) 비록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 시행되고 개인정보의 유용에 대하여는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개인정보의 유용이 완전히 차단되리라고 볼 수는 없다. 심지어는 정부가 보유 관리하는 개인정보가 정보용역회사의 매매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라는 사실만으로 국민의 알 권리충족이라는 차원에서 행하는 언론의 취재보도가 원천적으로 제한을 받아서는 안될 것이다. 그것은 종래 언론보도와 관련한 사생활보호를 위한 이른바 공익이론을 원용할 여지를 남겨 준다. 즉 공익의 입장에서의 보도는 개인의 사생활보호에 우선할 수 있는 것이다. 공적 인물에 대하여서는 그 사회적 지위에 부응하여 사생활보호에 일정한 한계가 따를 수 있다는 공적 존재의 이론도 참조할 가치가 있어 보인다. 9)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언론보도는 특히 개인정보에 관한 한 정보화 사회가 진전될수록 더욱더 신중해야만 한다. 정보화 사회에서의 개인은 발가벗겨져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언론에 의한 무차별적인 사생활에 관한 보도는 약자인 개인의 이익보호에 우선하여야 하는 언론의 사명에도 부합하지 않을 것이다.

#### IV. 정보공개와 언론

##### 1.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와의 관계

언론의 보도기능이 기본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준다는 점에서 알 권리의 확충강화는 언론의 자유를 보다 실질화시켜 주게 된다. 그런 점에서 종래 언론의 자유의 일부로 알 권리를 설명 하는 태도는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알 권리의 본격적인 등장이 현대적인 정보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행정과 국민과의 관계개선 즉 행정과 국민과의

직접적인 접근을 제도화시켜 주는 기능을 갖는다는 점에서, 종래 언론을 통한 국민의 공공정보에의 간접적인 접근양태가 이제 언론매체를 통하지 아니하고 국민이 직접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의 흐름에 새로운 변용이라 할 수 있다. 「헌법 제 21 조의 표현의 자유는 전통적으로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할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한다.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정보에의 접근이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정보에의 접근·수집 처리의 자유, 즉(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으며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이다. 자유권적 성질은 일반적으로 정보에 접근하며 수집·처리함에 있어서 국가권력의 방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하며, 청구권적 성질은 의사형성이나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수집을 방해하는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이는 정보수집 권 또는 정보공개청구권으로 나타난다.」 10)

## 2. 정보공개법의 비공개사정과 언론보도

### (1) 의의

주권자인 국민이 행정비밀주의를 타파하여 국민주권의 실질화를 기하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정보공개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국가의 모든 정보는 공개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정한 범위의 정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비공개 할 수 있도록 함은 각국의 입법례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비공개정보의 범위를 법상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정보공개법의 핵심적 논쟁사항의 하나이다. 정보공개법에서 비공개정보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 것은 자칫 정보공개법이 아니라 정보비공개를 법적으로 제도화 해주는 정보「비」공개법 내지 비밀보호법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비공개사항의 규정에 관해 막연하고 추상적인 규정 즉 「상당한 이유」 또는 「현저한 우려」 등의 표현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이해할 경우에는 이러한 표현이 공공기관의 자의적인 비공개의 우려를 보다 제한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민주당(안)이나 경실련(안)에서도 「충분한 이유」, 「상당한 이유」 등의 표현이 원용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비교법적으로는 간명하게 비공개정보에 관한 사항을 열거하는 프랑스 법이나 스웨덴법과 같은 모델을 고려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구체적인 문제점은 역시 정보위원회나 옴부즈만의 권고 또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정립될 수 밖에 없다.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는 크게 볼 때 국익에 관한 정보, 공익에 관한 정보, 개인의 기본권에 관한 정보, 특히 개인정보로 유형화할 수 있다.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이미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

이에 시안에서는 법령(제 1 호), 국익(제 2 호), 국민의 기본권(제 3 호), 형사사법적 정의(제 4 호), 인사행정(제 5 호), 공정한 행정(제 6 호), 의사결정과정(제 7 호), 개인정보(제 8 호), 법인정보(제 9 호)의 순으로 적용제외대상정보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이미 국내에서 발표된 각계 시안에서나 외국의 입법례에 비추어 본질적인 차이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 (2) 구체적 검토

① 제 1 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제 1 호는 법령에 의한 비공개 가능성을 열어둔 일반조항의 성격을 갖는다. 11) 이에 대해서는 법령의 형식을 빌려서 공공기관의 비공개에로의 도피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준 것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즉 법령을 통하여 개별적·특정적으로 공개 하지 못하도록 한 사항으로 한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12)

② 제 2 호: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이나 국방 또는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국익이나 공익의 필요성에 따라 정보공개를 제한하는 것은 외국의 법제에서도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남북분단이라는 특수상황과 맞물려서 국가기밀사항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설정하고 있다. 더구나 제 1 호에서 법령으로 비공개로 한 경우를 공개대상에서 제외시켜 놓고 있기 때문에 국가기밀과 관련된 일련의 법체제를 정보공개법의 제정취지에 맞추어 전면적인 정비를 하지 않을 경우 자칫 정보공개법이 권위주의체제하에서 제정된 기존 국가기밀 관련 법체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정보공개법의 목적이 국민의 알 권리의 최대한 보장에 있다면 국가기밀의 존재 이유는 국익보호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국민과 국익의 차원에서 국가기밀사항의 객관적·실질적 인식이 가능한 범위내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13)

국가비밀에 관한 관련법률은 형법 제 98 조 제 2 항(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 군형법 제 13 조 제 2 항(군사상의 기밀), 국가보안법 제 4 조 제 1 항(형법 제 98 조의 군사상의 기밀이나 국가기밀을 누설한데 대한 처벌), 국가공무원법 제 60 조(비밀엄수의무), 군사기밀보호법 등이 있다. 국가안전기획부는 국가안전기획부법 제 3 조에 따라 국가기밀보안업무를 관장하고, 그 절차에 관하여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제 4 조에 1 급, 2 급, 3 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국가기밀사항이라 하더라도 국회의 국정조사·국정감사 및 감사원감사와 국회의 대정부 질문 등의 경우에 한정적 공개가 가능하다.

③ 제 3 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이라는 표현이 반드시 논리필연적으로 연결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법문의 표현대로라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는 공익적 측면에서 공개를 제한한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으나 이를 반드시 공익적 측면에서 의 비공개 사유로만 이해할 수 없는 측면도 있다. 오히려 이는 사익보호의 측면도 강하게 떨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분리할 필요성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이라는 표현은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갖게 된다. 14)

④ 제 4 호: 범죄의 예방, 수사, 소추,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또는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한다고 인정하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공개로 인하여 형사사법적 정의의 실현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는 비공개로 한다는 원칙에 입각한 규정이다. 제 4 호는 대체로 행정연구원(안)을 원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해 놓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범죄의 예방,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은 삭제 하여도 무방하다고 본다.

어떤 절차가 재판에 계속중이거나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거부를 정당화시켜 주지 못한다. 15) 앞으로의 법 운용에 미국정보자유법 552(6) b(7)의 내용을 참조해 볼 필요가 있다: 「사법의 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조사기록 또는 정보. 다만 이러한 사법상의기록 또는 정보의 제출이, (A) 소송절차의 방해가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경우, (B) 개인의 공정한 재판 또는 심판을 받을 권리를 빼앗는 경우, (C)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되는 경우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경우, (D) 비밀리에 정보를 제공한 국가, 지방 또는 외국의 행정기관 혹은 관공서 또는 민간단체 등의 비밀 정보원의 정체가 노출되는 경우를 합리적으로 예측 할 수 있는 경우 및 사법당국이 수사과정에서 또는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조사활동을 행하는 행정기관이 작성한 기록의 경우에 비밀정보원에 의하여서만 제공된 정보를 공개하게 되는 경우, (E) 사법상 수사 혹은 소추의 기술 및 절차를 공개하는 경우 또는 사법당국의 수사 혹은 소추의 지침을 공개하게 되는 경우로, 그 공개가 법의 침탈위험을 초래하게 된다고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경우, (F) 개인의 생명 혹은 신체의 안전을 위협에 노출시키게 되는 경우가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경우.

⑤ 제 5 호: 공공기관 내부의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당해 기관의 인사행정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인사행정에 대한 행정비밀을 보호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현대행정은 행정주체의 자의적 · 재량적 범위를 축소하여 법치행정의 범주로 포괄시켜야 한다는 점을 고려 한다면 현실적 행정업무의담당자인 공직자의 인사는 객관적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인사행정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엄격한 준칙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행정관리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행정청 내부의 준칙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인사권자는 재량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인사행정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소지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정보로 본다.

⑥ 제 6 호: 감사, 감독, 검사, 규제, 입찰계약, 첨단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행정의 공정한 집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⑦ 제 7 호: 공공기관에서 의사결정 또는 정책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중에서 공개될 경우 의사결정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이나 정책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의사결정이나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행정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이러한 사항도 공개되어야 한다. 특히 이들 내용은

주로 정보공개법상의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언론기관이 취재보도의 자유의 원리에 입각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의 엄격한 적용으로 인하여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야기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언론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이 조항은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될 것이 요망된다.

⑧ 제 8 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 2 조에서 규정한 개인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 등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헌법적 가치를 갖는 두 개의 권리 즉 알 권리와 사생활비밀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기하고자 하는 규정이다. 특히 행정전산망 등의 가동으로 인하여 국민의 사생활이 공공기관에서 수집 · 관리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이들 정보의 자의적인 유출은 「유리알 인간화」 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운용은 구체적 타당성을 기해야만 한다.

⑨ 제 9 호: 법인 및 그 외의 단체와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 ·부당한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해 지장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 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정보공개로 인하여 법인등의 영업상 · 사업상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적 배려이다. 예컨대 특정기업이 연구 개발하여 특허출원이 되어 있는 사항에 관한 내용은 엄격히 비밀이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증권시장의 육성에 따라 기업의 국민화 내지 국민주시대를 열고 있음에 비추어 법인등의 비밀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것은 자칫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바른 언론을 위한 시민연합」이 국세청에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특정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결과가 외부에 밝혀질 경우에 본인은 물론 기업경영의 기밀이 유출되어 납세자의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조사과정에서 당국을 믿고 조사에 협조한 납세자와의 신뢰관계가 무너지게 되어 원활한 세정운영에 저해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결정」을 하고 있다. 16)

⑩ 법의 시행을 통한 구체적 타당성 확보의 필요성정보비공개사항을 법상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내용이나 본질에 있어서 비교법적으로도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면, 이들 규정을 현실적인 해석 · 적용 · 운용과정에서 어떻게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나갈 것인가가 더욱 본질적인 문제라고 본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정보공개법을 제정 · 시행하여 구체적인 문제점을 사안별로 해결해 나감으로써 하나의 통일적인 기준이나 준거가 제시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 (3) 정보공개법의제정과 언론의 취재보도

언론기관의 보도와 관련하여서는 알 권리의 제도화 즉 정보공개법의 제정이 현실적으로 당장 실질적인 효과를 동반할 수 있기 보다는 다소간의 시간이 경과함으로써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고 본다. 왜냐하면 언론의 보도는 공정성 못지 않게 신속성이 생명이므로 정보공개법의 원리에 입각한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는 이미 그 정보의 신선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외국의 정보공개법 운용실태를 보더라도 언론기관의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언론기관의 보도내용 중에서 일간지나 라디오·텔레비전의 일상적인 뉴스보도 이외에 심층취재를 요하는 특집보도의 경우에, 종래 공공기관의 비협조로 인하여 발생하던 특집편성의 애로사항은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를 통하여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보공개법의 제도화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언론기관으로 하여금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를 통해서 지득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 줌으로써 그 보도의 내용과 질을 보다 알차게 해줄 수 있으리라고 본다.

한편 정보공개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언론기관의 보도내용이 정보공개법의 내용과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언론기관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사항을 보도하는 경우에 그것 이 정보공개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사안이 국익관련사안에 대한 보도일 것이다. 17) 이러한 문제는 비록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기존법령 등에서 공개제한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정보공개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언론보도의 자유가 위축될 소지는 없다고 본다. 더구나 일반국민의 개인적 차원에서의 알 권리 충족의 문제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빠르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언론기관의 취재·보도의 자유를 단순히 평면적으로 정보공개법의 법리를 널리 적용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전형적인 예로서 공공기관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있는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로 할 수 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를 언론기관의 취재·보도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언론의 자유의 법리상 용납될 수 없다. 즉 정보공개법의 제정을 통하여 국정의 투명성을 국민 앞에 펼쳐 보여 줌으로써 언론기관의 취재·보도의 자유를 보다 내실 있게 한다는 점에서, 알 권리의 제도화는 언론의 자유를 보다 실질화시켜 주는 상호보완관계에 있다. 여기에 정보공개법의 제정이 자칫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는 기우를 씻어내기 위해서도 정보공개법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의 삭제가 필요하게 된다. 18)

## V. 개인정보보호와 정보공개

### 1. 정보공개와 한계로서의 사생활비밀보호

공공기관은 행정 전산망 등을 통하여 엄청난 양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정보공개와 원리에 입각할 경우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일체의 정보는 정보공개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 알 권리 충족기능이 자칫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법에서는 비공개사항으로서 개인정보를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정보공개법시안 제 7 조 제 1 항 제 8 호). 개인정보보호법제 2 조에서

규정한 개인정보 즉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2.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공개법의 규범조화적응용

국민의 알권리의 충족이라는 정보공개법과 개인의 사생활비밀보호라는 개인정보보호법은  
분명히 그 본질적 기능이 상반되는 사항임에 틀림없다. 공개와 비밀보호 사이의 규범조화적  
응용은 앞으로의 정보법체계의 한국적 정착에 중요한 시금석이 되리라 믿는다. 한편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보장하기 위한 사생활비밀보호체계의 만전을 기해 나가면서,  
다른 한편으로 주권자로서의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시켜 나가야 하는 일음 상충되는 두  
가지 목적을 조화롭게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특히 이들 두 개 법체계가 정보화 사회의  
진전과 더불어 동시에 정립된 것이고 보면 앞으로의 정보화 사회의 급속한 진전은 이들 두  
개의 법체계 자체도 새로운 변용의 시대를 맞이할지도 모를 일이다. 1970년대 정보화  
사회의 초기에 정립된 법이론 체계가 21 세기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정보매체의 발달과  
더불어 야기되는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할 때 개인정보보호법과정보공개법이라는 두 개의  
기본축은 그 기반을 확고히 해나갈 수 있으리라고 본다.

## VI. 결

### 1. 기자의 자질향상과 전문기자제의 정립

이제 언론에 부여되고 있는 외적 환경은 언론도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면제된 사각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더구나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공개법의 제정 등으로 인하여 한편으로는  
국민의 개인적 인격권의 보호보장의 법제화와 다른 한편으로 공적 정보에 대한 국민의  
직접적인 액세스가 보장되고 있으며, 그것은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의 엄격한 현실적 적용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언론의 자의적인 보도태도에 대한 하나의 제약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차제에 언론보도 또한 개인정보보호법과정보공개법의 법리에 충실하기 위하여는 기자들의  
전문성제고가 절실한 시점이다. 국가기밀사항에 대한 보도, 사법관련사안에 대한 보도 등은  
국익이나 개인의 인격권보호 차원에서 신중을 기해야만 한다. 또한 오늘날 신문지면이 1 일  
40 면이 넘어 가는 무한 증면 경쟁체제로 돌입하고 있으며, 종합유선방송과 민영방송의  
도입으로 수십 개의 텔레비전 채널이 가동되고 있는 정보의 홍수시대에 있어서 언론사간의  
지나친 경쟁이 언론보도의 질을 저하시킬 소지를 안고 있다. 자칫 특종위주 · 흥미위주의  
보도로 인하여 정보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국민의 자유에 권리보호의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언론사로서는 당해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자질을 가진 기자를 양성하여 사회의 전문성에 부응하는 보도의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2. 법 운용상의 탄력성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공개법의 엄격한 적용은 자칫 언론의 설 자리를 위축시킬 소지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알 권리를 통하여 국민이 직접 공적 정보에 대한 액세스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국민이 이들 정보공개청구권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정보란 한정될 수 밖에 없다. 정보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더욱 집단적이고 대량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사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들 정보를 효율적으로 취사선택하여 국민의 정보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언론의 기능과 사명을 오히려 더욱 더 필요로 하게 된다. 따라서 정보화 사회의 법적 대응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공개법이 자칫 언론의 국민의 알 권리 충족기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관계당국은 각별히 유념하여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정보관련법제의 정립과 더불어 기존에 언론의 취재보도의 자유는 더욱 확충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언론도 새로운 법제와 기존의 취재보도의 관행 사이에 야기될 충돌과 갈등을 합리적으로 대처하는 준비와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주

- 1) 국민의 알 권리의 충족이라는 헌법상 이념의 정립이 그간 학계는 물론 1989년 이래 헌법재판소의 판례 및 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인 청주시가 청주시의회의 정보공개조례 제정을 모법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 위법성을 법원에 제소하였다.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통해서 동 조례의 적법성을 인정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조례가 붓물처럼 제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조례는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제정되고 있는데 그 숫자는 1994년 10월 31일 현재 133개에 이르고 있다. 정부에서는 행정정보공개법 제정에 앞서 시행을 위하여 건조성과 추진기반을 구축하고 운영 경험을 축적하기 위하여 '각급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적극 추진하여 줄 것'을 바라는 취지에서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국무총리훈령 제 288호, 1994. 3. 2.)을 제정·발령하였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무총리의 훈령사항이므로 행정기관 내부에만 효력을 미치고 일반적인 법적 효과를 동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보공개법의 제정을 위한 준비조치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 2) 현재 1992. 11. 12, 89헌마 88, 교육법 제 157조에 대한헌법 소원.
- 3) 이에 관한 상세는, 성낙인, "한국언론법제의 특징과 문제점", 언론중재(언론중재위원회), 1994 봄호, 13면 참조.
- 4) 성낙인, "정보화 사회의 언론과 언론중재", 언론중재위원회 토론회 (대구) 주제 발표문 참조, 1992.

- 5) 권영성, "사생활권의 의의와 역사적 변천", 언론중재(언론중재위원회), 1983 여름호, 6~14 면.
- 6) 이에 관한 상세는 성낙인, "행정상 개인정보보호-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공법연구(한국공법학회), 1994. 6, 286~324 면 참조. 특히 사적 부문에 대한 규율까지 이 법이 통괄적으로 관리하게 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지도감독 · 권리구제에 관한 새로운 기구의 설치가 불가피하다.
- 7) 총무처, 축조해설 개인정보보호법, 31 면. 개인에 관한 정보의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1. 내면의 비밀: 사상, 신조, 종교, 가치관, 양심 등, 2. 심신의 상태: 체력, 건강상태, 신체적 특징, 병력 등, 3. 사회경력: 학력, 범죄경력, 직업, 자격, 소속정당 · 단체 등, 4. 경제관계: 재산상황, 소득, 채권채무관계 등, 5. 생활 · 가정 · 신분관계: 성명, 주소, 본적, 가족관계, 출생지, 본관 등.
- 8) 총무처, 축조해설 개인정보보호법, 1994, 7 면.
- 9) 박용상, "표현행위의 위법성에 관한 일반적 고찰", 공법이론과 판례연구회 (1994.10) 발표논문 참조.
- 10) 헌재 결정 1991. 5. 13, 90 헌마133, 기록등사신청에 대한 헌법소원.
- 11) 비공개에 관한 현행법령은 다음과 같다. 검찰보존사무규칙 제 22 조, 공직자윤리법 제 10 조, 국가안전기획부법 제 12 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 12 조, 군근무성적평정규정 제 9 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 22 조, 비송사건절차법 제 13 조, 사무관리 규정시행규칙 제 100 조, 통신비밀보호법 제 11 조, 형사소송법 제 47 조,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제 27 조, 보안업무규정 제 24 조.
- 12) 강경근, "시론", 시민의 신문, 1994. 10. 29, 3 면. 행정연구원(안) 제 8 조 제 10 호 (다른 법령에 의하여 비공개에 관한 특별한 기준을 설정하거나 사안을 개별적 또는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비공개로 하도록 규정한 정보); 경실련(안) 제 7 조 제 1 항 제 2 호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법령이 사항을 특정하여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사항), 민주당(안) 제 7 조 제 1 항 제 2 호 (법률 또는 법률에 기한 명령에 의하여 특정적으로 공개를 면제한 사항, 이 경우 법률은 재량의 여지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그 사항에 대한 비공개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며, 또는 비공개 조치의 상세한 기준을 정하거나 비공개 되어야 할 사항의 상세한 종류를 합리적으로 열거하여야 한다).
- 13) 헌재 1992. 2. 25. 결정, 89 헌가104, 군사기밀보호법제 6 조 등에 대한 위헌심판: 「군사기밀보호법(1972. 12.26. 법률 제 2387 호) 제 6 조, 제 7 조, 제 10 조는 같은 법 제 2 조제 1 항 소정의 군사상의 기밀이 비중지의 사실로서 적법절차에 따라 군사기밀로서의 표지를 갖추고 그 누설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협을 초래한다고 볼 만큼의 실질가치를 가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 14) 강경근, "정보공개법시안상의 정보공개범위와 문제점",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1995. 1, 12 면.
- 15) 그런 점에서 소송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해서 정보공개의 거부를 인정한 마르세이유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Cf. Tri. adm. Marseille, 12 mai 1981. Este've c. Cne d'Aix-en-Provence : Gaz. Pal.1981. 2, 715, note Amiel.

16) 서울지방국세청장의 1994년 7월 15일 비공개결정; 언론사의 세무조사결과 공개거부취소청구에 대한 국세청장의 1994년 10월 21일 청구기각 결정. 상세한 비판적 정토는 강경근, 앞의 논문, 17~19면 참조.

17) 언론중재, 특집 언론보도와 국가기밀, 언론중재위원회, 1987 여름호; 언론중재, 특집 국가이익과 언론보도, 언론중재위원회, 1991 여름호, 참조.

18) 정보공개법시안의 벌칙조항은 공청회를 통해 나타난 여론수집 과정에서의 비판에 직면하여 이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정보공개법에서 벌칙조항을 삭제할 경우 정보공개법 위반사항에 대하여서는 일반법의 원리에 따른 규율에 의하게 된다.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의 제조항을 통해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

□ 런던 시티대학교(언론학석사), 카디프대학교(언론학 박사), AP 통신 서울특파원

□ 저술 「영국의 공보정책」 「한국현대언론과 전문기자제도」, 「인터뷰, 그 기술과 즐거움」, 「보도의 진실, 진실의 오보」

외

□ 현재 국민일보 기자, 한국외국어대, 건국대 언론학 강사